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0
----------	-----

제출년월일: 2001. 9. 5.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제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규정된 조항(기간도과)을 삭제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시켜 문제를 사전 예방토록함

-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켜
-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용요율도 1000/50, 1000/25, 1000/10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각 각 1000/50이상, 1000/25이상 1000/10 이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함

2. 완공되지 않은 건설중인 재산(공정이 50%이상 진척된건물.기타시설물)에 대하여도 공유재산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토록함.

- 완공되지 않은 건설중인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재산관리(용도변경, 용도폐지 등)를 할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건설중인 재산(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에 대해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신속을 기하고 설치비용 등 중복투자를 방지토록 함

2. 최저생계비 급여대상인 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연체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급여 받는 수급자(구,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다가 임대료(재산평가액의 1%적용)를 연체하였을 때 지금까지는 임대료의 15%을 연체이자로 부과하였으나, 이것마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장기 체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바
- 앞으로는 임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급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을 방지 함

4. 공유재산 무단점·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내용을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함.

-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임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재산관리청이 이를 확인하여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 앞으로는 점·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이유, 산출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소명토록 하고, 향후에는 임대받아 사용토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법제 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10조제1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로 하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사용”을 “사용·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중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 중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8조의3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제9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제2항 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 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 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이 조례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때는 필요한 경우 연채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서 제출등) ①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 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전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9조를 개정하기까지 개정전 조례에 의한다.

소관 실 · 과 · 소		회계과 ☎ 940-4332
입안자	회 계 과 장	박 세 영
	재산관리담당	변 석 기
	담 당 자	정 훈 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u>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u>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u>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② <u>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u> ③ <u>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u>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 <생략> ④ <u>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1. <u>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2. <u>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u> ⑤ <생략>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시 공유재산 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99. 9. 29>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시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 공유재산 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 지역은 66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여야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 ----- ----- ② <삭제> ③ <삭제>

현행	개정안
<u>용도폐지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기치지 아니할 수 있다.</u> 1. <u>동지역 : 600㎡ 이하 토지(당해토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u> 2. <u>읍면지역 : 900㎡ 이하 토지</u> 3. <u>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u> ④ < 생략 >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u> ② <u>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u> 1. < 생략 > 2. <u>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u> 3. < 생략 > 제12조(사용허가 기간) <u>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u> 제13조(사용허가조건) <u>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u> 1. ~ 6. < 생략 > 7. <u>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u> 8. <u>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부담</u>	④ <헌행과 같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u>----- ----- ----- ----- 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 -----<u>사용·수익</u>----- 1. <헌행과 같음> 2. <삭제> 3. <헌행과 같음> 제1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u>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u> ----- -----<u>사용·수익허가</u> --- ----- ----- --. 제13조(사용·수익허가조건) <u>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u>----- ----- 1. ~ 6. <헌행과 같음> 7. <u>사용·수익허가</u> 8. <u>사용·수익허가</u>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u>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 생략 > 4. <u>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u> 5. < 생략 > 6. <u>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u>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6. < 생략 > 7. <u>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타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u> 8. < 생략 > 9.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 ② ~ ③ < 생략 >	제14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 -- <u>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u>----- -----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 ----- 1. ~ 3. <현행과 같음> 4.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u> 5. <현행과 같음> 6. <u>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u>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 삭제 > 8. < 현행과 같음 > 9.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u>----- ----- ② ~ ③ <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정안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중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위의 개발 또는 다목적 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1000분의 25</u>로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으로 한다. ③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40</u>으로 한다. 1. ~ 2. <생략> ⑤ <생략>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중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u>1000분의 50</u>이상 ----- -----<u>1000분의 25</u>이상----- ② ----- -----<u>1000분의 10</u>이상----- ③ ----- -----<u>1000분의 50</u>이상----- ----- ----- ④ ----- -----<u>1000분의 40</u>이상-----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25로 한다. 다만,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u>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신설> 제2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 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허가</u>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u>감면율</u>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3. <생략>	⑥ ----- ----- ----- 1000분의25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급자 ----- -----1000분의10이상---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사용·수익-----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u>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u>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u>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u> 1. ~ 6. <현행과 같음> ② <u>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은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u> 제 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u>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1. <u>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u> 2. <u>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1. <u>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u> 2. <u>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u> 3. <u>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u> ③ <u>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u>

현행	개정안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15%의 연체료를 붙여 15원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채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 역에서는 1,000㎡	② 시장이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채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 (변상금의 청문등) ①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한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천법 제33조-----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2. <현행과 같음> 3. -----

